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신용하 의원 외 11명

2. 제안이유

- 구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응급의료의 지원 및 계획(안 제3조~제4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안 제5조~제7조)
-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구미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5.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6.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및 제16조제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근거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응급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응급환자의 정의 또한 같은 법에 따름.

제 정 안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응급의료의 지원 및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에 의거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기본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한 지역보건의료계획(4년마다 수립)에, 시행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매년)에 포함해서 작성하면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될 것으로 판단됨.

제 정 안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과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설치 의무시설: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 구미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5조제2호에 따른 설치 권장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경우에는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비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설치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설치하며 소속 직원에게 응급장비사용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장비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점검
2. 응급 장비 관리에 관한 서류 작성 비치
3. 사용 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사항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의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규정, 설치 및 권장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법규상 문제가 없음.
또한, 상위법에서 규정한 설치 의무시설 외에 구미시의 특성에 맞게 추가 지정할 수 있는 설치 권장시설을 규정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제 정 안

-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
 2.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의 관리 책임자
 3.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 환자 본인 및 보호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 및 학생
 5.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관, 군부대 등에 종사하는 비의료인으로서는 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의 종사자
 6.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시민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시민의 생명 안전과 응급의료 이용 시 편의 증대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1.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 사용법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응급의료에 대해 홍보가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은 소방서, 각급 학교, 사업장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통계가 없었음.

이 조례를 통해 보건소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구미시민의 안전체감도 및 관심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 정 안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비밀준수의 의무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 없음. 다만, 제11조(시행규칙)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 기재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